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 3. 28.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자 : 민경환, 이대원, 최미애, 박영웅, 임현, 이범윤, 박재국  
이언구,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박종갑, 이영복  
(민경환 의원 대표발의)

나. 제출일자 : 2007년 3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2007. 3. 26),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경환 의원)

#### 1.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그 필요성이  
없어진 중학생을 제외하는 대신에 대학생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장학생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안 제3조)
- 다. 장학생 선정 시 보고체계를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30일 이내에 도지사”로 함(안 제5조)
- 라. 장학생의 정원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에서 “5퍼센트”로 축소 조정함(안 제6조)
- 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정함(안 제7조)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 가. 개정이유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반감된 문제점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오류를 개선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 나. 종합의견

장학생 수혜대상자에 대학생 추가(안 제1조)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와 그 실효성을 중대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짐  
기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붙임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조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3. 26.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수정이유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수정주요내용

- 개정안 제6조 제2항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로 수정(안 제6조제2항).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 수정안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장학생의 정원 ) 장학생은 연간 시 ·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u>7%</u>로 한다.</p> <p><u>〈신설〉</u></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 ①장학생은 연간 시 ·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u>5퍼센트</u>로 한다.</p> <p>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u>1:1</u>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 제①항(개정안과 같음)</p> <p>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p>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1항 제1호중 “현재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를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한다.

제4조중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충청북도새마을회”로 한다.

제5조중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중 “7%”를 “5퍼센트”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b>	<b>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b>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p> <p>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재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2. ~ 3.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p> <p>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2.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4(추천)장학생은 매학년마다 <u>새마을중앙회</u> 시·군 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이하 “시·군지회”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 이하 “도 새마을회”로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4조(추천)장학생은 매학년마다 <u>충청북도새마을회</u> 시·군 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이하 “시·군지회”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 이하 “도 새마을회”로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지회장은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5조(선정) 도 새마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u>20일</u>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선정) 도 새마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u>30일</u>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u>7%</u>로 한다.</p> <p><u>〈신설〉</u></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u>5퍼센트</u>로 한다.</p> <p>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p>
<p>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p>	<p>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u>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u></li> <li>3. (생략)</li> <li>4. (생략)</li> <li>5. (생략)</li> </ol>	<p>제9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u>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삭제)</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ol>

## 관 계 법 령 발 췌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도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